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87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6월 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DDP 조성사업으로 이전한 舊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과의 이전합의('08.2월)에 의거 최대 10년간 영업활성화 지원키로 함에 따라, 지난 '08년부터 중소기업 공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'18년 본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
- 나. 본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서울산업진흥원과 민간위탁 재계약이 필요함
- 다. 서울산업진흥원과의 금회 민간위탁 재계약이 4회차에 해당됨에 따라 『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23개 점포(잠실 22, 지하철역사 1)

구분	잠실스포츠종합상가	지하철역사
소재지	송파구 올림픽로 25	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
운영규모	약 2,860㎡	17.2㎡

운영형태 (재임대)	체육시설관리사업소⇔SBA⇔상인	도시철도공사⇔SBA⇔상인
지원내용	- 특별금리자금 용자지원 - 인테리어 비용 지원 - 홍보비, 임차료 등	- 임대보증금 용자지원 - 인테리어 비용 지원
개 장 일	'08. 8.29 ('17.8.28. 계약만료, 1년 연장 가능)	'09.4.15 ('19.4.14. 계약만료)

○ 지원내용

- 전문 스포츠용품 영업환경 조성
-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·마케팅 등 지원

나. 민간위탁개요

○ 수탁자 : 서울산업진흥원(대표자 : 주형철)

○ 위탁기간 : 1년 5월('17.7.30. ~ '18.12.31.)

○ 위탁업무

- 공동화사업장 임대(재임대) 및 관리
- 공동화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(4회차)

○ 소요예산 : 1,368,803천원('17년 예산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추진근거

-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8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
○ 추진현황

- 1회차 : 3년('08.협약체결일.~'11.3.31, 최초)
- 2회차 : 3년('11.4.1~'14.3.31, 재계약)

※ 기간연장 : '14.4.1.~4.30.(1개월)

- 3회차 : 3년('14.5.1.~'17.4.30, 재계약)

※ 기간연장 : '17.5.1.~7.29.(90일)

라. 추진 필요성

- 지난 '08년부터 추진하여온 중소기업 공동화 사업이 '18년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
- 중소기업공동화사업의 초기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한 서울산업진흥원의 경험과 운영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8조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중소기업 사이의 협력)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○ 서울시와 조합원

- 체결일 : '08.2.13.
- 당사자 : 서울시 ⇔ 상인대표(조합장 등 상인 7명)
- 주요내용

가. 산업통상진흥원 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장 활성화 지원
나. 굿모닝시티 내 사업장 임대기간 5년, 1회(5년) 연장 가능
 잠실종합운동장 사업장 임대기간 3년, 2회(6년)에 1년 연장 가능(10년 범위)
다. 임대보증금의 10% 상인 부담, 90%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확보하나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부담하는 보증금의 이자(연간 4%) 상인 부담
라. 홍보는 매년 10억원 범위 내에서 조합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협의 추진
마. 상권 활성화를 위해, 서울시, 자치구, 시 관련단체 우선구매 노력
바. 경영안전자금 용자는 최대 4억원까지 가능. 2억원까지 연이자율 4%, 2억원초과 4억원까지 연이자율 5%, 3년 거치 4년 균등분활상환, 담보는 상인이 제공
사. 기본 운영자금 4천만원까지는 무담보 조건으로 용자
아.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무상 지원

○ 서울시와 비조합원

- 체결일 : '08.1.4.
- 당사자 : 서울시 ⇔ 상인(비조합원 5인)
- 주요내용

가. 상인들이 대체상가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 관리 점포에 입점 지원
나. 대체상가에 '08.2.15까지 입점, 동대문운동장 내 점포 서울시에 즉시 반환
다. 임대기간은 5년, 1회에 한하여 연장
라. 임대료 지급은 입주일로부터하고, 임대료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함.
마. 임대보증금의 10% 상인 부담, 90%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확보하나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부담하는 보증금의 이자(연간 4%) 상인 부담

라. 기 타

-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: 적정(조직담당관, '16.12.13)
-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 결과 : 적정(소상공인지원과, '17.4.18)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조직담당관, '17.5.25)

※ 작성자 :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정책팀 전민재 (☎2133-5537)